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120/20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120/20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120/20 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년 10월 2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0년 10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의 차입매도 및 매수거래를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당초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차입을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성과가 저조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차입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9. 주식의 차입 시 차입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차입을 하지 않는 편드에 비하여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120/20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5122
A	95123
C1	95124
C2	95125
C3	95126
C4	95128
C-E	95129
C-F	95130
C-I	95131
C-W	95132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50%미만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 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채권	2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 증권	2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
4.어음	2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5. 집합투자증권	70%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증권의 차입		<p>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p> <p>※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주에 한하여 차입매도가 허용 되었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차입매도 규제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 기타 다른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하여 주식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20% 범위내에서 주식의 차입매도 및 매수거래를 통하여 종합주가지수(KOSPI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기본운용방침

신탁재산의 70%이상을 주식 관련 ETF에 투자하며, 동 펀드자산의 20%범위 내에서 기업가치 대비 고평가 종목 및 환경변화 등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차입매도 한 후 당해 주식매도 자금으로 저평가 종목을 추가매수 하는 120/20 전략을 활용하여, KOSPI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또한, 120/20 전략을 활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에서 열거된 시세조종행위 및 부당거래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2) 운용전략

- 개별기업에 대한 재무분석 및 밸류에이션 지표 분석, 단기이익 모멘텀 등 추가적 정성 분석을 통하여, 선정한 매수/차입매도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추구
- 제한적 범위내에서 롱숏(Long/Short) 전략을 활용하여 위험 조정 후 초과수익률 달성
- 주식편입비(롱포지션에서 숏포지션 차감) 90%이상의 고편입 기조 유지
단, 매크로환경, 지수방향성 등 시장 환경의 큰 변화 예상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활용

(2)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주식의 차입매도/매수를 통한 추가수익을 통해 KOSPI를 초과하는 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

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 3) 이 투자신탁은 추가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주식의 차입매도 및 매수 전략을 실행합니다. 주식의 차입 시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 이외에 차입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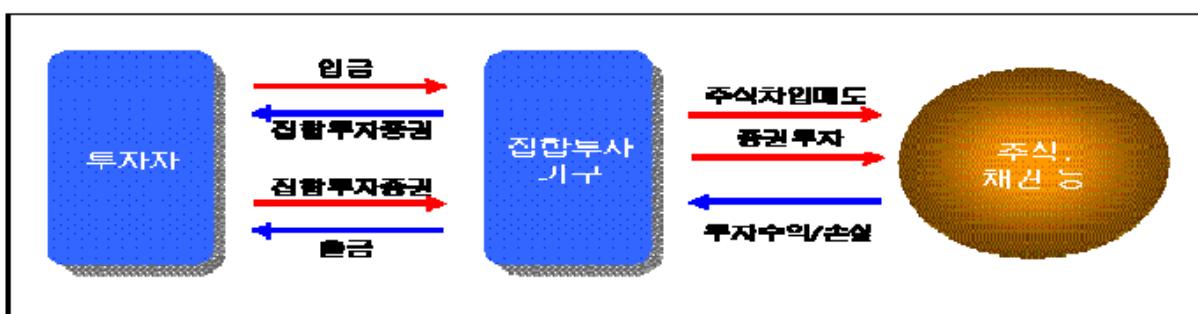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차입매도 위험 관리
 -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일반주식형 펀드의 리스크 수준에서 주식형 펀드대비 초과 수익 추구
 - 차입매도한도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
- 종목별 차입매도 한도 : 10%**
- 차입매도(숏 포지션) 종목 유동성 위험
 - 종목 선정 시 유동성 요인 우선적 고려 및 지속적 모니터링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20%이내에서 주식의 차입매도/매수전략을 실행하며, 차입매도/매수전략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매도/매수전략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원금손실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이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A-)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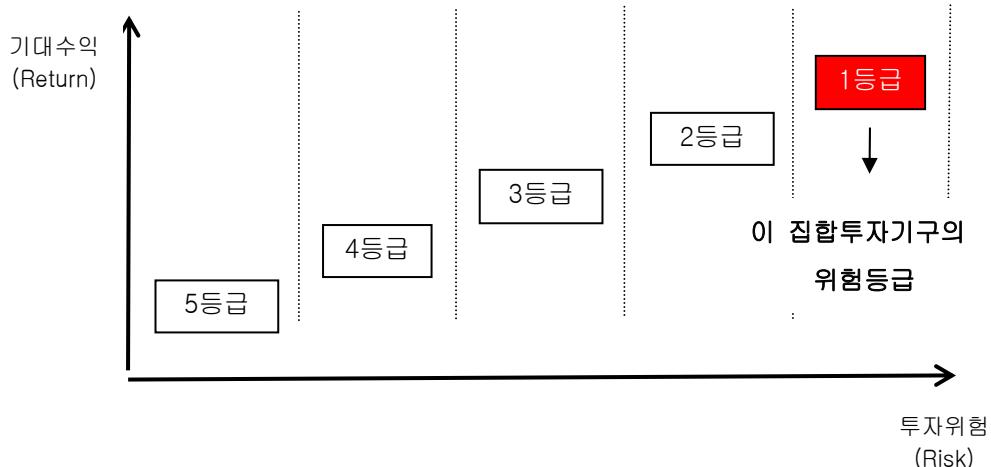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차입거래에 따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통제된 위험 수용 한도 내에서 주식차입거래를 수행하여 잠재적인 초과수익 기회를 추구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과 주식차입 거래비용 등으로 단순매수전략에 비해 원금손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식의 차입거래는 브로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차입 후 매도거래에 대한 실무적인 제약 즉, 담보물의 제공과 담보물의 평가, 차입거래의 수수료 등의 제약이 수반되며 담보제공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차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의 환수 요청(Recall)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거래비용(주식확보와 재차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여자의 경우 배당 결산일 이전에 주식을 환수하여 배당수입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종도 환수요청이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차입매도 전략을 실행할 예정이지만,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차입매도 및 매수전략을 추가적인 수익창출의 주요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당국의 차입매도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차입매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목표로 하는 투자전략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주식의 차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원하는 투자전략의 실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주에 한하여 차입매도가 허용되었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차입매도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동 펀드자산의 20% 범위내에서 주식 차입매도/매수거래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주식 매수전략만 실행하는 일반 주식형 상품에 비해 더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관련 ETF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 및 주식을 차입매도한 자금으로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차입매도/매수전략 및 이에 따른 원금손실 확대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위험 및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책임운용전문인력(2010.10.2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정병훈	1975	부장	25 개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7,040 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 6년 메릴린치(홍콩) 주식운용 3년 현) 하나 UBS 자산운용 주식운용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

(기준일 : 2010년 3월 6일, 단위 : %)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09.09.07 ~ 2010.03.06
120/20증권[주식]					6.47
종류 A					6.55
종류 C1					5.71
종류 C-E					6.03
종류 C-F					-1.11
비교지수					3.24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기준일 : 2010년 3월 6일, 단위 : %)



연도	최근1년차 2009.09.07 ~ 2010.03.06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120/20증권[주식]					
종류 A					
종류 C1					
종류 C-E					
종류 C-F					
비교지수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C2, C3, C4 C-E, C-F, C-I,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주)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기타비용 (주 1)	총보수 비용	증권거래 비용 ^(주 2)
종류 A	0.710%	0.730%	0.030%	0.018%	0.311%	1.799%	1.478%
종류 C1	0.710%	1.500%	0.030%	0.018%	0.348%	2.606%	1.308%
종류 C2	0.710%	1.333%	0.030%	0.018%	실비	2.091%	실비
종류 C3	0.710%	1.167%	0.030%	0.018%	실비	1.925%	실비
종류 C4	0.710%	1.000%	0.030%	0.018%	실비	1.758%	실비
종류 C-E	0.710%	1.000%	0.030%	0.018%	0.336%	2.054%	1.425%
종류 C-F	0.710%	0.030%	0.030%	0.018%	0.328%	1.116%	1.396%
종류 C-I	0.710%	0.300%	0.030%	0.018%	실비	1.058%	실비
종류 C-W	0.710%	0.000%	0.030%	0.018%	실비	0.758%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 유 발생시	-	사 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반기회계년도 2010.3.6)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반기회계년도 2010.3.6)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81,579	674,558	1,107,817	2,395,339
종류 C1	270,193	851,785	1,492,989	3,398,463
종류 C-E	237,529	748,809	1,312,496	2,987,610
종류 C-F	114,326	360,412	631,723	1,437,979
종류 C-I	108,431	341,828	599,148	1,363,830
종류 C-W	77,685	244,901	429,257	977,111

주 1)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 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수익증권과 종류 C1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3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C1 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로 자동 전환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류 C2, C3, C4 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종류로 투자자는 종류 C1 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최고한도세율 : 소득세 35%, 주민세 3.5%)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최고한도세율 : 법인세 25%, 주민세 2.5%)

라.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의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
(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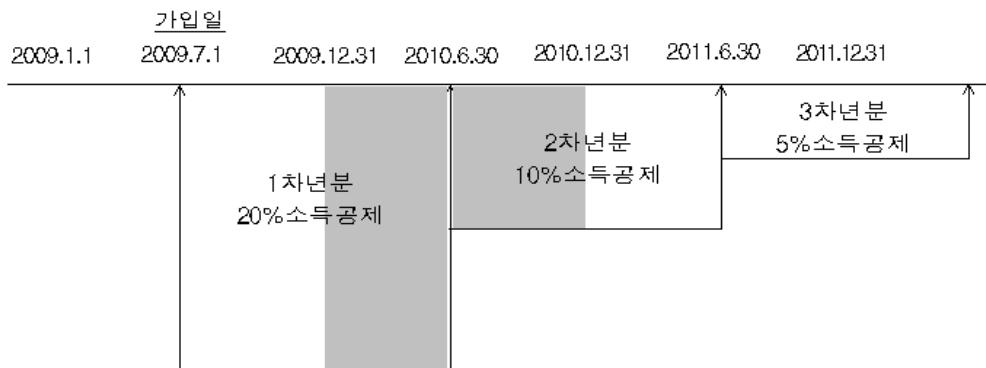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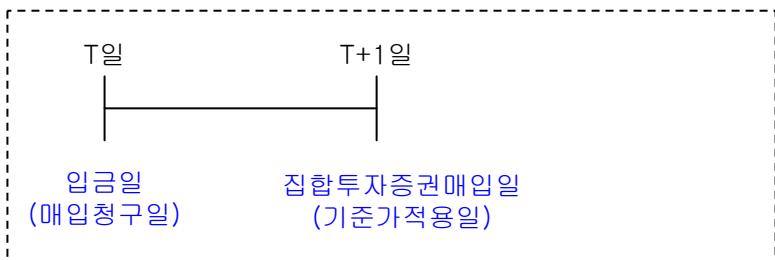
구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E	판매사 인터넷뱅킹(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C-F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종류 C-I	50 억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C-W	판매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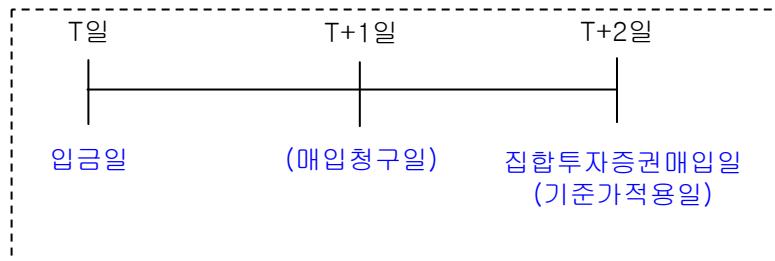
- 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3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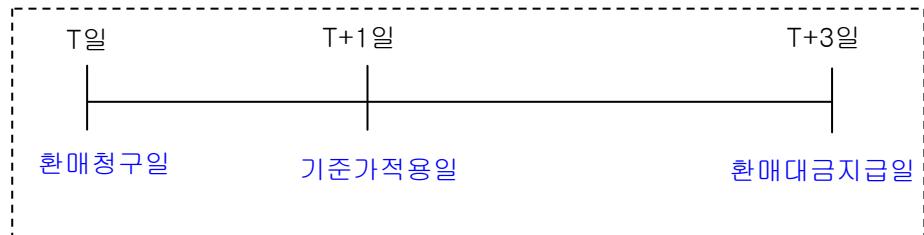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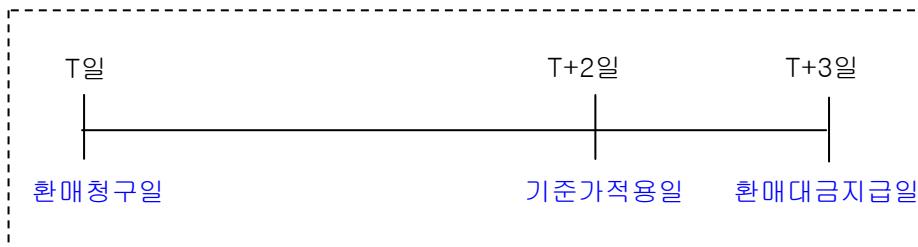
- 오후 3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3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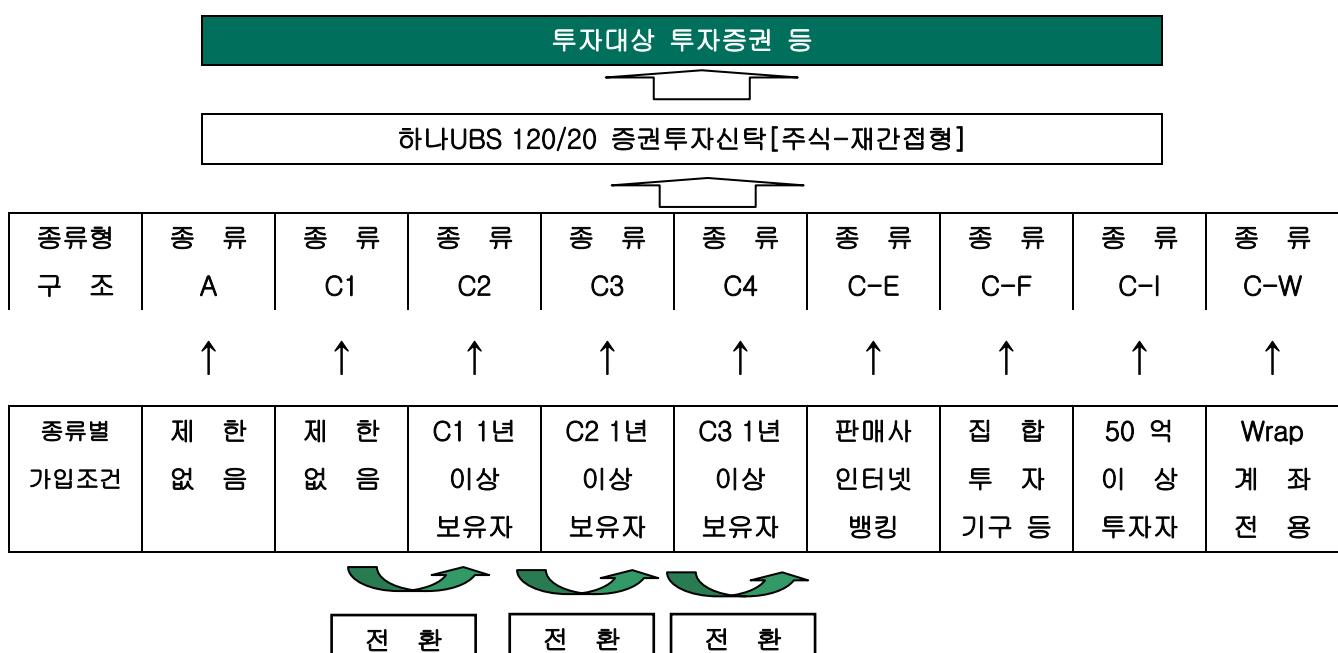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C1, C2, C3, C4 C-E, C-F, C-I, C-W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1회

4.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1) 종류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 (2) 종류 C2, C3, C4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종류로 종류 C1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종류 C1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한 종류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 이후 추가로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1 기(반기)		
	20100306		
I . 운용자산	4,826,454,331		
증권	4,746,725,900		
현금 및 예치금	1,728,368		
기타운용자산	78,000,063		
II . 기타자산	54,709,004		
자산총계	4,881,163,335		
III . 기타부채	455,445,305		
부채총계	455,445,305		
I . 원본	4,336,880,369		
II . 수익조정금	100,218,281		
III . 이익잉여금	-11,380,620		
자본총계	4,425,718,030		
I . 운용수익	31,917,478		
이자수익	2,928,044		
배당수익	55,899,349		
매매/평가차익(손)	-27,035,113		
기타이익	125,198		
II . 운용비용	43,298,098		

관련회사보수	29,983,713		
기타비용	13,314,385		
III. 당기 순이익	-11,380,620		
* 매매회전율	89		
* 매매수수료	26,897,165		